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20나102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20나1028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7가단7152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망 G의 소송수계인 AK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박승득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 종결 2020. 7. 22.

판결 선고 2020. 8. 19.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7가단7152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2 목록 기재 망 G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제1심 원고였던 망 G의 사망으로 이 법원에서 원고가 소송을 수계함에 따라 청구취지가 변경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3면 제13행 '원고의'를 '원고들의'로 고치고, 제3면 제14행 다음에 '마. 원고 망 G은 2019. 11. 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AK, 아들인 AL, AM이 있으나 상속재산분할협약에 의해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한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신한미

판사김우현

판사허일승

별지